



: 2020-03-16

서울고등법원

제 27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나2034976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구은석, 김상윤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가합526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2. 12.자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수이고, 피고는 연예인 대리업,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2.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전속계약과 함께 일체로서의 계약을 구성하는 부속합의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피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7년)로 한다.

제5조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3자와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원고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원고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원고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와 피고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원고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피고가 원고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④ 피고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피고는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⑦ 피고는 원고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30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 ⑧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확인 및 보증)

-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사적제재수단으로서 원고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원고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8조 (부속 합의)

- ①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부속 합의서

3. 수익의 분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행사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정하는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 2) 상기 1항을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정하는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피고에게 70%, 원고에게 30%를 각각 분배하기로 한다.

4. 상기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상기 계약기간 5년 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익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위반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통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보서는 2019. 3. 2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주장



1) 피고는 ① 원고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의무(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 제3항, 제7항)와 정산자료 제공의무(제12조 제8항)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지원의무(제5조 제1항)를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변경을 강요하여 연예활동에 관한 협의의무(제5조 제2항)를 다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8.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3)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해지통보서가 2019. 3. 22.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전속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차이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

1)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피고가 수령하되, 피고는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매월 30일자로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하고(제12조 제1 내지 3항, 제7항),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 제8항).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은 최소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인데다가,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는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해 피고의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뒤 원고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 실현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연예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30일자로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제12조 제7항),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8항),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단위로 정산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후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12조 제8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전속가수 정산내역'이라는 제목의 자료(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피고에게 보낸 2019. 3.경 이전의 전속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산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위 정산내역도 피고가 원고의 수입내역과 의상비, 교통비, 교육비, 음반 제작비 등의 각종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집계표에 불과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유효한 정산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위 정산내역에는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출연계약서나 금



용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비용공제내용 중에도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정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수입 중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원고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 제3항).

이처럼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는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원고의 연예활동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 전속가수 정산내역(을 제3호증)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을 제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에는 공제 비용으로 차량 리스료, 연습실 방음공사 비용, 법인 휴대전화 구입비용 등과 같이 원고 개인의 연예활동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 자신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목적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를 알 수 없는 항목들이 다수이다.

④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7. 12.경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익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피고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인정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나머지 해지 사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계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G(원고의 언니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포함된 부속합의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이 2018. 10.경 피고에게 원고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의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서가 2019. 3. 22.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아울러 이 사



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계약의 속성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더하여 갑 제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18. 1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원고와 G이 원고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청하자 원고에 대한 지원과 차량 운행 등을 전부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해지통보서 발송 이후 'H'와 'I'에 출연하는 등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위 각 행사의 주최사인 J와 K에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위 각 행사에 출연하여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였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불화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는 위 신뢰관계 상실도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



이 그 무렵 해지되었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9. 3. 22.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해지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경미

 판사 홍승구

 판사 이호재